

2021 러시아 제개정 주요 법령 동향

2021. 1. 14.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2021 러시아 제개정 법령

목록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자
정부정책	▪ 2021년 대체 공휴일	2020년 10월 24일
	▪ 'Мир'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2021년 1월 1일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2021년 1월 1일
	▪ 국가제품추적시스템 도입	2021년 7월 1일
출입국	▪ 통합전자사증 소지 외국인의 러시아 국경 통과 허용 지점 운영	2021년 1월 1일
외국인	▪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사증 도입	2021년 1월 1일
	▪ 외국인 통합전자사증 발급 절차 도입	2021년 1월 1일
	▪ 장기거주증 신규 양식 적용	2021년 3월 1일
기업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1년 연간 정기조사	2020년 11월 30일
조세	▪ IT 기업 혜택	2021년 1월 1일
	▪ 북극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2021년 1월 1일
	▪ 통합 임시소득세 폐지	2021년 1월 1일
	▪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2021년 1월 1일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2021년 1월 1일
	▪ 새로운 예금이자소득세 계산 및 납부 절차 도입	2021년 1월 1일
	▪ 담배제품 및 주류 소비세 인상	2021년 1월 1일

2021 러시아 제개정 법령

목록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자
노동	▪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2020년 12월 3일
	▪ 2021년 취업자에 대한 전자근로수첩 의무화	2021년 1월 1일
	▪ 원격 근무 규제안 도입	2021년 1월 1일
파산	▪ 일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 조치 연장	2020년 10월 7일
	▪ 파산인의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2021년 1월 1일
관광	▪ 러시아 호텔 등급 부여 규정 개선	2021년 1월 1일
정보통신기술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의무화	2021년 1월 1일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신고제도	2021년 1월 1일
	▪ 지적재산권 분야 개정	2021년 8월 1일

정부정책 : 2021년 대체 공휴일

관련 법령

- 2021년 공휴일 변경에 관한 총리령(№. 1648, 2020.10.1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0.10.2020 N 1648 "О переносе выходных дней в 2021 году")

주요 내용

- 다음과 같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함.
 - 2021년 1월 2일(토)을 11월 5일(금)로 대체
 - 2021년 1월 3일(일)을 12월 31일(금)로 대체
 - 2021년 2월 20일(토)을 2월 22일(월)로 대체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4일

정부정책 : 'Мир'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관련 법령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2300-1, 제정 1992.02.07, 최근 개정 2020.12.08.) (Закон РФ от 07.02.1992 N 2300-1 (ред. от 08.12.2020)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주요 내용

-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결제시스템인 'Мир' 카드 결제 의무화
-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Мир' 카드 결제가 의무이며, 매출액이 3,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의무화 예정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정부정책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관련 법령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경공업 제품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No. 1956, 2019.12.3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1.12.2019 N 195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маркировки товаров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редствам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и особенностях внедр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за оборотом товаров, подлежащих обязательной маркировке средствам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товаров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 경공업 제품 유통업자들은 경공업 제품 유통 및 판매 수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내에 제품표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 또한, 모니터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한편,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공업 제품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러시아에 수입된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까지 제품표시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내에 제품표시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2021 러시아 제개정 법령

정부정책 : 국가제품추적시스템 도입

관련 법령

- 세법 제1편(No. 146-FZ, 제정 1998.07.31,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от 31.07.1998 N 146-ФЗ (ред. от 23.11.2020))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7월 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국가제품추적시스템 도입
-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 추적 대상임.
- 추적 대상 제품별로 제품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제품 판매 시 해당 제품등록번호가 인보이스(счет-фактура)에 포함됨.
- 추적 대상 제품을 거래하는 자들에 대하여 추적 대상 제품 거래 보고서 및 제품 추적 정보 관련 서류의 세무서 제출 의무화
- 추적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보이스는 전자 형태로 제공함.

시행일자

- 2021년 7월 1일

출입국 : 통합전자사증 소지 외국인의 러시아 국경 통과 허용 지점 운영

관련 법령

- 통합전자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러시아 국경 통과 지점 목록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No. 2741-p, 2020.10.23.)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10.2020 N 2741-p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пунктов пропуска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границ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ерез которые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осуществляют въезд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и выезд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единой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 통합전자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29개 러시아 국경을 통과 할 수 있음.
- 본 목록은 칼리닌그라드 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자동차, 철도, 항공, 해상 및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 지점을 포함하고 있음.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외국인 :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사증 도입

관련 법령

-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No. 114-FZ, 제정 1996.08.15, 최근 개정 2020.12.0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5.08.1996 N 114-ФЗ (ред. от 08.12.2020)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사증 도입
- 통합전자사증은 관광, 상용/개인 목적으로 러시아에 단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러시아 외무부의 별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 통합전자사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러시아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일 이후 최대 16일간 체류 가능
- 대상국 명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독일, 그리스, 덴마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터키, 체코, 일본 등 총 52개국(대한민국 미포함)
-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한-러 사증면제협정으로 인해 관광 목적의 경우 전자사증과 무관하게 무사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외국인 : 외국인 통합전자사증 발급 절차 도입

관련 법령

- 통합전자사증 발급 절차 및 일부 시행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No. 1793, 2020.11.0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7.11.2020 N 1793 "О порядке оформления единых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некоторых а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통합전자사증 발급 절차가 도입됨.
- 통합전자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 전에 러시아 외무부의 별도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합전자사증이 발급됨.
- 발급된 통합전자사증 정보는 러시아 국경 통과 지점에 자동 전달됨.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외국인 : 장기거주증 신규 양식 적용

관련 법령

- 장기거주증 양식 승인에 관한 내무부령(No. 399, 2020.06.03) (Приказ МВД России от 03.06.2020 N 39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орм бланков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주요 내용

- 2021년 3월 1일부터 유효기간 없는 신규 양식의 장기거주증이 발급됨 (고급전문가(HQS) 및 그 가족구성원은 제외).
- 14세, 20세, 45세가 되면 장기거주증을 교체하도록 규정
- 무국적자는 정보 보안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장기거주증 교체 의무화

시행일자

- 2021년 3월 1일

기업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1년 연간 정기조사

관련 법령

- 2021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및 2021년 조사 연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및 정부규제(감독)기관 및 지방자치제 규제기관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연간 정기조사계획 마련 규칙 제7항 개정에 관한 총리령(No. 1969, 2020.11.3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11.2020 N 1969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формирования ежегодных планов проведения плановых проверок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2021 год,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ок в 2021 году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ункт 7 Правил подготовки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зора) и органам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ежегодных планов проведения плановых проверок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주요 내용

-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을 포함한 원격 장비를 사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1년 연간 정기조사 실시
-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021년 연간계획에 포함된 현장 정기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20 영업일 전에 현장 정기조사 대신 기관 방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개시되는 정기조사 기간은 10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간 조사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명부(등기부)에 기재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시행일자

- 2021년 11월 30일

조세 : IT 기업 혜택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러시아 정부는 IT 분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위해 2020.7.31. 세법을 개정하였음.
- 세제혜택 적용 대상
 - 1) 정보기술업을 영위하며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 연방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기술업 인가 취득
 -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판매,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사용권 제공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 2) 기초전자부품 전자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기업명부'에 포함된 기업
 -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조세 : IT 기업 혜택

주요 내용

- IT 분야 러시아 기업 인정 시 세제혜택

- 1) 법인세율 20%에서 3%로 인하

- 개정 전: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2%,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18% (합계 20%)

- 개정 후: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3%,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0% (합계 3%)

- 2) 공적보험료율 14%에서 7.6%로 인하

- 개정 전: 공적연금보험료율 8%, 공적사회보험료율 2%, 공적의료보험료율 4% (합계 14%)

- 개정 후: 공적연금보험료율 6%, 공적사회보험료율 1.5%, 공적의료보험료율 0.1% (합계 7.6%)

- 3)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러시아프로그램 통합명부(도입시기: 2016년, 관리기관: 러시아 통신부)'에 등록된 러시아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판매 및 양도(온라인상 사용권 제공 포함)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북극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북극지역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에게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 세율 0% 적용 및 지방정부 귀속 세율 인하
- 북극지역 입주기업 지위를 보유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세금 공제
: 일부 고정자산 취득 및 운용에 소요된 경비 수준으로 유용광물세 인하
- 세금 공제 요건
 - 1) 석탄 및 탄화수소 연료 채굴세 인하
 - 2) 고정자산은 유용광물 채굴을 위한 도로, 운송,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어야 함.
 - 3) 공제 한도는 부과된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통합 임시소득세 폐지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통합 임시소득세 폐지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제도 또는 간이과세제도로 전환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활업종 과세제도를 적용 받거나 전문직 소득세 납부도 가능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0년 귀속분부터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고지 방식이 적용됨.
-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서와 필수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기존의 13%에서 15%로 인상
-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재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소득 및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종전과 같이 13%의 개인소득세율 부과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새로운 예금이자소득세 계산 및 납부 절차 도입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단, 이자율이 연 1%를 초과하지 않는 루블화 예금 및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 이자는 제외).
예) 러시아 기준금리가 4.5%인 경우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45,000루블(1백만 루블 x 4.5%)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임.
- 예금이자소득세는 러시아 시중은행들이 신고한 정보를 근거로 국세청이 산출하며, 예금이자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세금 고지서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조세 : 담배제품 및 주류 소비세 인상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제품 및 주류 소비세 인상
- 겔, 겔크림 형태의 알코올 함량 비식료품 생산증명서 발급 규정
- 에탄,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소비세 도입
- 담배제품 소비세 신고서 작성 절차 변경 및 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 코드 업데이트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노무 :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관련 법령

- 2021년 일부 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확정에 관한 총리령(No. 1823, 2020.11.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11.2020 N 1823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на 2021 год допустимой д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хозяйствующими субъектам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2021년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확정 및 승인에 관한 총리령(No. 1902, 2020.11.2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11.2020 N 1902 "Об определении потребности в привлеч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на основании визы, в том числе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м группам, и утверждении квот на 2021 год")

주요 내용

- 2021년 일부 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를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
: 작물재배업(총 정원의 50%), 목재 가공 및 목제품 제조업(총 정원의 50%), 건설업(총 정원의 80%), 전문 상점의 주류 소매업(총 정원의 15%), 전문 상점의 담배제품 소매업(총 정원의 15%), 육상여객운송업(총 정원의 24%), 화물 자동차 운송업(총 정원의 24%), 부동산관리업(총 정원의 70%), 스포츠업(총 정원의 25%)
- 2021년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를 101,871명으로 확정.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음.
: 기관, 법인의 대표 및 관리자(6,540명), 광산업 및 건설업 근로자(31,625명),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업 근로자(11,673명), 제조업 분야 대기업 및 영세기업의 숙련된 근로자(16,980명), 전체 업종 일반 비숙련 근로자(2,392명), 기타 전문 인력 그룹(5,477명)

시행일자

- 2020년 12월 3일

노무 : 2021년 취업자에 대한 전자근로수첩 의무화

관련 법령

- 노동법(No. 197-FZ, 제정 2001.12.30, 최근 개정 2020.11.09.)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2.2001 N 197-ФЗ (ред. от 09.11.2020))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취업한 자에 대하여 전자근로수첩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종이근로수첩은 발급하지 않음.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노무 : **원격 근무 규제안 도입**

관련 법령

- 노동법(No. 197-FZ, 제정 2001.12.30, 최근 개정 2020.11.09.) (Трудово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12.2001 N 197-ФЗ (ред. от 09.11.2020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또는 추가합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상시/임시 원격 근무를 규정할 수 있게 됨.
 - 상시 원격 근무: 근로계약 기간 중
 - 임시 원격 근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추가합의서로 규정한 기간 내 중단 없이 또는 근로자의 원격 근무 및 고정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교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 원격 근무는 급여 삭감 사유가 될 수 없음.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파산 : 일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 조치 연장

관련 법령

- 일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 조치(모라토리움) 연장에 관한 총리령(No. 1587, 2020.10.01.)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1.10.2020 N 1587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моратория на возбуждение дел о банкротстве по заявлению кредиторов в отношении отдельных должников")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 조치(모라토리움)를 2021년 1월 7일까지 연장

시행일자

- 2020년 10월 7일

파산 : 파산인의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령

-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 개정 2020.11.23.)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23.11.2020))

주요 내용

- 파산인의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입찰 대상 재산뿐만 아니라 파산인 자산 매각 과정에서 매각하는 제품 및 제공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관광 : 러시아 호텔 등급 부여 규정 개선

관련 법령

- 호텔 등급 부여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 1860, 2020.11.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8.11.2020 N 186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классификации гостиниц")

주요 내용

- 호텔 종류 변경.
 - 1) '시티호텔(городская гостиница (отель))' 도입
 - 2) 농촌 지역, 산악 지대, 산림, 해안가 소재 호텔 종류 확정
- 호텔업 등급 부여 인증기관: 러시아 관광청(Ростуризм), 러시아 관광청 산하 호텔업 등급 부여 협의회, 러시아 관광청 산하 민원 접수 위원회 (현행 담당기관: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산하 협의회 및 위원회)
- 호텔 등급 부여를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목록 간소화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정보통신기술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의무화

관련 법령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전 탑재된 기술적으로 복잡한 일부 제품군 목록, 일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내 사전 탑재 대상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목록 작성 및 사전 탑재 절차에 관한 총리령(No. 1867, 2020.11.18.)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8.11.2020 N 1867 "О перечне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технически сложных товаров 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программами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порядке составления и ведения перечня российских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установлены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технически сложных товаров, и порядке 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установки")

주요 내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및 스마트 TV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의무화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신고제도

관련 법령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주무기관 신고 및 명부 등록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No. 1824, 2020.11.12.)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12.11.2020 N 182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авил уведомл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о начал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и (или) программ для электронных вычислительных машин, которые предназначены и (или)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приема, передачи, доставки и (или) обработки электронных сообщений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и "Интернет", а также ведения реестра указанны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주요 내용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메시지 접수, 전달 및/또는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및/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장하는 자(이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21년부터 활동 개시 관련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Роскомнадзор)에 신고해야 함.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으로부터 신고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자발적 신고도 가능), 해당 신고는 <http://97-fz.rkn.gov.ru/>에서 가능함.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정보통신기술 : 지적재산권 분야 개정

관련 법령

- 민법 제4편(No. 230-FZ, 제정 2006.12.18, 최근 개정 2020.07.31.)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вертая)" от 18.12.2006 N 230-ФЗ (ред. от 31.07.2020))

주요 내용

- 2021년 8월 1일부터 러시아 특허청(Роспатент)이 직접 또는 연방 산업재산권기구(Феде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ромышле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업무를 수행함.
- 특허성 판단은 러시아의 공인학술기관들이 담당
- 특허이전의무가 있는 특허 신청인의 경우 특허출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제한
- 특허출원 심사 절차 변경

시행일자

- 2021년 8월 1일

JIPYONG

감사합니다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